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24호 2026. 6. 17.(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157호

광양시 고시 제159호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기본계획 승인 고시	1
『옥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기본계획 승인 고시	2
『옥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기본계획 승인 고시	3
『진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기본계획 승인 고시	5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6

공 고

광양시 공고 제1408호

광양시 공고 제1421호

광양시 공고 제1422호

광양시 공고 제1424호

광양시 공고 제1425호

광양시 공고 제1432호

광양시 공고 제1446호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
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2차 재공고·열람	15
공시송달공고	17
공시송달공고	19
공시송달공고	21
도로지정공고	23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5

회 람										
--------	--	--	--	--	--	--	--	--	--	--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중심지에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3. 사 업 비 : 4,000백만원 (국비 2,800, 시비 1,200)
4.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일원
 - 세부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봉강두레마당 기능개선, 비봉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중심지 진입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덕촌마을회관 환경개선, 명암마을회관 환경개선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부대비용 등
5.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7.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농촌활력팀으로 문의(☎ 061-797-3445)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 양 시



1. 사업의 명칭 : 옥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중심지에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3. 사 업 비 : 4,000백만원 (국비 2,800, 시비 1,200)
4.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일원
 - 세부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백운도솔관 리모델링, 119청사 리모델링, 개현마을회관 리모델링, 덕천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부대비용 등
5.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7.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농촌활력팀으로 문의(☎ 061-797-3445)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옥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중심지에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3. 사 업 비 : 4,000백만원 (국비 2,800, 시비 1,200)
4.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일원
 - 세부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생활편의 드림센터 조성, 옥곡 드림 광장 조성
옥구슬센터 리모델링, 죽양마을회관 리모델링,
원적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부대비용 등
5.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m ²)		비고
	시·구·면·리	지번			지적	편입	
1	옥곡면 신금리	1380-3	대	개인(김*래)	550	550	생활편의 드림센터 조성 및 옥곡 드림 광장 조성
2	옥곡면 신금리	1383	답	개인(김*순)	1,000	1,000	
				개인(이*영)	736	736	
3	옥곡면 신금리	1380-9	답	광양시	1,314	1,314	
4	옥곡면 신금리	1384-3	답	광양시	348	348	

8.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농촌활력팀으로 문의(☎ 061-797-3445)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 양 시



1. 사업의 명칭 : 진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중심지에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3. 사 업 비 : 2,600백만원 (국비 1,820, 시비 780)
4.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일원
 - 세부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진상복지회관 리모델링, 비촌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부대비용 등
5.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7.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농촌활력팀으로 문의(☎ 061-797-3445)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7.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8길 33-1 외 5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6 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135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1길 131	20260617	2008100 1	매천 황현 사당 및 생가가 있는 곳에서 작명,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801-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47	20260617	2008100 1	옛 관아 서쪽 들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81-5, 81-4, 81-6, 81-8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진월사동길 13	20260617	2008100 1	읍면명과 마을지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산283-8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1048	20260617	2008100 1	백학동으로 가는 길에서 명명
5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40-9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길 71-5 (마동)	20260617	2011122 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6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592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8길 33-1 (마동)	20260617	2019111 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2. 입법취지(제정이유)

-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민·관 협력 기반의 유치 활동 지원 체계 구축으로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8조)
-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1조)
- 협력사업 추진 및 여론수렴·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15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6. 11. ~ 7. 1.(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5. 제정 조례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 시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총무과 (우 57785)

- 전 화: 061-797-2719

- 팩 스: 061-797-2579

- 전자우편: chanhol205@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 례 명: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마.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기관의 직원으로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 협의·조정
 3.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에 따라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 대상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 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0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사무소(임시사무소 포함) 건축비, 임차료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 보조
4.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5.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및 개선
6.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7.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8. 지방세 감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2. 이사 비용 등 이주에 소요된 경비
3. 숙소 임대료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5. 배우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상담 지원
6. 자녀의 보육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광양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과 기관,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차 재공고·열람

광양시 공고 제2025-2714(2025. 11. 26.)호로 공고·열람하고, 광양시 공고 제2026- 960 호(2026.4.15.)호로 재공고·열람한 마동, 광영동·옥곡면 신금리, 성황동 일원의『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차 재공고·열람하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7.

광 양 시 장

1.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초 공고(안)	재공고(안)	2차 재공고(안)
3개 지구 공통	• 건축물에 대한 형태 계획 -지붕형태 경사지붕 원칙 ⇒ 권장으로 변경 및 3개 지구 통일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완화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유자시설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건축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포주택’ 변경(삭제) - 점포주택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혼합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규제 통일 - 1층 바닥높이 단차 10~20cm ⇒ 20cm (1층 주거용도 제외) - 바닥 높이 기준 : 높은 쪽 ⇒ 평균지반고 - 1층 층고 4.5m 이내(신설)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규제 통일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1층 층고 4.5m 이내(삭제)
와우 지구	-	• 건축물에 대한 건축한계선(단독주택용지) 완화 - 완충녹지변 4m ⇒ 삭제	• 변경 없음
	-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보행지장물’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 성황·도이지구와 통일	• 변경 없음

구 분	당초 공고(안)	재공고(안)	2차 재공고(안)
광영·의암지구	- 건축물에 대한 건축한계선 [공동주택용지 (C1블록)] 완화 - 건축한계선 15~22m ⇒ 12m 변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 전면공지 불일치 사항 조정 (단독주택·준주거용지) - 고시문과 시행지침간 내용 불일치로, 전면공지 내 보행지장물 설치할 수 없도록 조정	변경 없음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보행지장물’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 성황·도이지구와 통일	변경 없음
성황·도이지구	- 건축물에 대한 건축한계선(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완화 (기정)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1m) ⇒ (변경)건축한계선1m (단, 공원·녹지, 주차장과 접한 경우 제외) 변경	- 건축물에 대한 건축한계선(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완화 - 단독주택용지 : 전 구간 1m ⇒ 일부 1m [주 보행동선(중로) 위주] - 준주거용지 : 전 구간 1m ⇒ 일부 1m (주차장용지와 접한 경우 삭제) - 상업용지 : 전 구간 3m ⇒ 2~3m(이면도로변 2m) - 주차장용지 : 전 구간 1m ⇒ 일부 1m 유지 - 단독주택용지 내 : 주 보행동선(중로)와 접한 구간만 1m 유지 - 준주거용지 내 : 도로와 접한 구간만 1m 유지	- 건축물에 대한 건축한계선(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완화 - 단독주택용지 : 전 구간 1m ⇒ 일부 1m [주 보행동선(중로) 위주, 준주거 용지변 삭제] - 준주거용지 : 전 구간 1m ⇒ 일부 1m (주차장용지와 접한 경우 및 상업용지 배면도로변 삭제)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대지내 공지(전면공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예외규정 적용은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기적용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관계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2차 재공고 사유 및 열람기간·장소 등

가. 재공고 사유: 광양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나. 재공고 기간: 2026. 6. 17. ~ 2026. 7. 1. (14일간)

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재공고 기간

라.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광양시청 도시과, 산단택지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061-797-3426) 및 산단택지과(☎061-797-3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① 2. 공고기간 : 2026. 6. 15. ~ 2026. 6. 29.(15일간)

②
③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④
4. 공시송달 내용

건 축 주		위반건축물 현황		이행강제금(원)	반송 사유
성 명	주 소	대지위치	위반내용		
이*연	광양시 영수길 ***-*	태인동 1500-4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처마) 40.5㎡ 무허가증축	182,000원	이사감
김*희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	광양읍 목성리 1057	지상1층 창고시설 13.2㎡ 52㎡ 12.9㎡ 무허가신축	2,445,000원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미리 계고해야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⑤ 2. 공고기간 : 2026. 6. 15. ~ 2026. 6. 29.(15일간)

⑥
⑦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⑧
4. 공시송달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별첨] 참조
- 다.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건 축 주		위반건축물 현황		이행강제금(원)	반송 사유
성 명	주 소	대지위치	위반내용		
골약 체육회 (강*열)	광양시 도이길 *	도이동 485-3번지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46㎡ 무허가 증축	1,338,000원	수취인 불명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⑨ 2. 공고기간 : 2026. 6. 15. ~ 2026. 6. 29.(15일간)

⑩ ⑪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⑫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별첨] 참조

다.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건 축 주		위반건축물 현황		이행강제금(원)	반송 사유
성 명	주 소	대지위치	위반내용		
인*미	광양시 금영로 ** ***_***	광영동 784-21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7㎡ 무허가증축	1,116,000원	폐문 부재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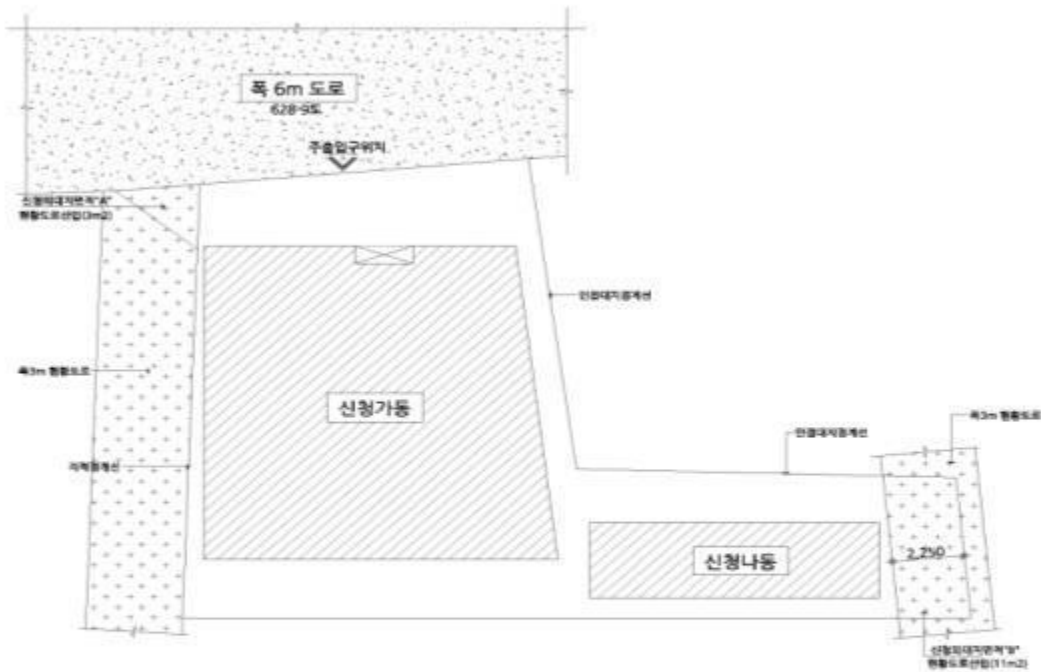
2026. 6. 16.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6. 30.(14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32-4번지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32-4번지	현황도로	3m	14m ²	정○성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 (☎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도로 현황도
S=1/150

신청외대지면적(현행도로산입)

'A'부분	3 m2 - CAD구적
'B'부분	11 m2 - CAD구적
계	14 m2



② 지적 약사도
S=1/800

설계명 PROJECT TITLE	도로현황도 ROAD STATUS	축척 SCALE 1/150	날짜 DATE	주최 PATRON	검토 CHECK BY	작성 번호 DRAWING NO.	도면 번호 SHEET NO.	 준 건축사사무소 JON ARCHITECTS OFFICE 5774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지동1길 20 (2F) Tel: 061-762-0816 Fax: 061-762-0815
----------------------	----------------------	----------------------	------------	--------------	----------------	----------------------	--------------------	---

건축사 윤 동 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회의록 공개 기준 정비

3.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제31조 제9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회의록 공개 기준 정비(안제3조 제8항~11항)
 - (심의방법) 대면심의 원칙,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
 - (회의록 공개)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 부동산 투기, 특정한 이익 제외
 - (민간위원 구성비율 제한) 전직공무원의 수는 민간위원의 3분의 1이하 제한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중복사항 삭제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5. 6. 17. ~ 7. 7.(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회계과장, 전화: 061-797-2274, FAX: 061-797-2581, E-mail: h akki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u>	<u>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관리책임) (생략)	제2조(관리책임) (현행과 같음)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⑦(생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⑦(현행과 같음)
⑧ <u>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	⑧ <u>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⑨ <u>심의회는 간사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u>	<생략>
⑩ ~ ⑫(생략)	⑨ (삭제)
제4조(심의회 업무) ① ~ ② (생략)	⑨ ~ ⑪ (현행 ⑩~⑫와 같음)
	제4조(심의회 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생략)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과 같음)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략)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 ④ (생략)	제7조(실태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의 집단화) (생략)	제8조(재산의 집단화) (현행과 같음)
제9조(재산의 보존) (생략)	제9조(재산의 보존)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 ② (생략)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③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생략)	제13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생략)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② (생략)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기간) (생략)	제16조(무상사용 기간)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리 및 처분) (생략)	제17조(관리 및 처분)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② (생략)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제18조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 (생략)	제19조(사용허가)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생략)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⑥ (생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② (생략)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생략)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고권의 배제) (생략)	제23조(연고권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③ (생략)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생략)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1 ~3 (생략)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1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전남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 전 남 광 주 특 별 시 장 이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⑥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생략)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⑤ (생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생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⑧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③ (생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생략)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④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② (생략)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계약서) (생략)	제36조(대부계약서)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생략)	방법)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⑥ (생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② (생략)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생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제40조(신탁의 종류) (생략)	제40조(신탁의 종류) (현행과 같음)
제41조(공유임야 관리) (생략)	제41조(공유임야 관리) (현행과 같음)
제42조(처분의 제한) (생략)	제42조(처분의 제한) (현행과 같음)
제43조(분수립의 설정) (생략)	제43조(분수립의 설정) (현행과 같음)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② (생략)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청사의 부지) (생략)	제45조(청사의 부지) (현행과 같음)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③ (생략)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② (생략)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정의) (생략)	제48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49조(관사의 구분) (생략)	제49조(관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관사의 면적) (생략)	제49조의2(관사의 면적) (현행과 같음)
제50조(사용허가) (생략)	제50조(사용허가)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용책임) (생략)	제51조(사용책임) (현행과 같음)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생략)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현행과 같음)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략)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생략)	제55조(사용료의 면제) (현행과 같음)
제56조(비품의 관리) (생략)	제56조(비품의 관리) (현행과 같음)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② (생략)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변상조치) (생략)	제58조(변상조치) (현행과 같음)
제59조(준용) (생략)	제59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② (생략)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② (생략)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생략)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현행과 같음)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생략)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현행과 같음)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④ (생략)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생략)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현행과 같음)
제63조(합필의 신청) (생략)	제63조(합필의 신청)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생략)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현행과 같음)
제65조(준용) (생략)	제65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66조(시행규칙) (생략)	제6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